



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

1) 예산편성 비목

비 목	지출기준
홍보비	-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- 현수막, 유인물, 영상 등 홍보 관련 제작품
소모성 물품 구입비	-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- 집기구입은 본 사업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경우 센터와 사전 협의 후 진행
임차비	- 일시 대관, 기자재, 차량(버스)임차 등에 해당 - 모임 거점공간 임대료, 월세 등은 지급불가
회의비	-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하며, 외부전문가에만 활용 가능 - 동일인 건별 125,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 의무 (기타소득 8.8%) - 사업소득 신고 시 금액에 상관없이 3.3% 원천징수 ※ 강사비, 회의비, 공연비 지급기준 참고
자문/ 컨설팅비	
강사비	
공연비	
교육비	-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발생하는 여행자보험, 입장료, 교재비, 교통비 (기차, 버스, 쏘카, 그린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시 대여비)
식/다과비	- 식다과비는 보조금 총액의 20%이내 준수 - 1인당 : 식비8천원, 다과4천원 이하 ※ 단순 운영회의에 식비 지출 지양, 교육, 워크숍 및 벤치마킹 등에 활용 가능 ※주류비용 불가
활동비	- 보조금의 20% 이내 준수(단, 마을종합지원사업은 30% 이내) - 경기도 생활임금 (1시간 11,485원) 내외로 하되, 활동가 선임과 지급 기준은 공동체 상황에 맞게 수립하며, 활동가 활동시간은 주15시간(월 60시간) 초과 금지 - 동일인 건별 125,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 의무 (기타소득 8.8%)

2) 예산편성 불가능 비목

비 목	지출기준
각종 수수료	-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계좌이체, 수수료, 배달(송)료, 우편료 등

3) 강사비, 회의비, 공연비 지급 기준

강 사 비			
구분	지급기준	지급액	지급대상
일반 1급	기본 1시간	23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-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활동경력 10년 이상 해당분야 활동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- 정부·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
	초과 1시간당	120,000	
일반 2급	기본 1시간	12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어, 취미과목 등 전문자격증 소지 강사 - 활동경력 5년 이상 문화예술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
	초과 1시간당	100,000	
일반 3급	기본 1시간	8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1~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
	초과 1시간당	50,000	
보조 강사	기본 1시간	4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 강사를 보조하는 인력 - 보조강사는 최대 2인을 넘을 수 없음
	초과 1시간당	40,000	
회의비 · 자문/컨설팅비			
회의비 자문/컨설팅비	기본 1시간	1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의 주제의 해당분야 외부전문가(내부회의 지급 불가) - 온라인(비대면) 회의는 50%만큼 적용
	초과 1시간당	100,000	
공 연 비			
출연자 10인미만	1일 최대	3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연팀, 뮤지션, MC 등을 섭외한 경우 해당
출연자 10인이상	1일 최대	500,000	
사회자	1일 최대	200,000	